

【붙임 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2026. 3.

목 차

❶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지원사업 공모	1
I. 사업개요	2
II. 사업 유형별 지원기준	6
1. 종합형 사업	6
2. 맞춤형 사업	8
3. 군집형 사업	11
4. 공통 유의사항	13
III. 사업추진 절차	15
IV. 대상선정 기준	18
V.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항	27
VI. 사업지원 및 관리 등	32
VII. 유의사항	34
[첨부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원용도	36
[첨부2]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성	39
❷ 서식 및 참고	45
[서식1] 시그니처사업 추진현황 보고	46
[참고1] 지원 항목 및 기술요소 세부기준	49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53
[참고3] 그린리모델링 표준설계도서	54
[참고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정산 방법 및 세부절차	55
[참고5]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사업	59
[참고6] 시그니처 사업 사례	61
[참고7] 그린리모델링 종합시공사례(청주의료원, 삼척시보건소)	63
[참고8]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광명 구름산어린이집)	64
❸ Q&A	68

**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지원사업 공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강화되는 2035 NDC 달성과 건물부문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로 기존 건축물의 저탄소화 및 재난·재해 등 기후 위기 안전성 강화
- (사업목적)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저감·기후 적응 기술 적용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적응력을 갖춘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 유도

2 지원사업 주요내용

- (사업명) 2026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
-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이하 “운영고시”)
- (사업시행)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위탁시행
- (사업규모) 총 1,688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
- (대상모집) 별도 공지예정
- (주요내용) 공공건축물 중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도서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 대상으로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실시 후 에너지성능 개선, 기후위기적응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대상 세부기준은 본문 P.3~5 참조

3 사업유형

-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다각적 지원
- ❶ **(종합형)**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❷ **(맞춤형)**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❸ **(군집형)** 하나의 대지 또는 인접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종합형 사업	맞춤형 사업	군집형 사업
		

4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대상기관”)

*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경우 제외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제외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2. 동법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아래 지원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2016년 1월 1일 이전)

구분	해당용도		구분	해당용도	
1	도서관		15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	기타 교육시설	유치원	16		자활센터
3		평생교육시설	17		성매매피해지원시설
4		직업훈련소	18		성폭력피해보호시설
5		학원·교습소	19		가정폭력보호시설
6		독서실·기원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	경로당		2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	노인요양시설		22		건강가정지원센터
9	노인복지시설		23		청소년복지시설
10	기타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24		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11		복합노인복지시설	25	기타 공공시설	주민공동시설
12	사회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26		어린이회관
13		정신보건시설	27	기타 전시장	
14		노숙인시설	28	수련시설	

* (중요) 지원용도별 세부기준은 본문 P.36 [첨부1] 의 법적근거에서 확인 필요

** 일부 용도에 한하여 연면적 지원 규모가 다름

5 지원항목

○ ^①에너지성능개선, ^②기후위기적응, ^③추가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 총 사업비 대비 에너지성능개선 항목의 비율은 최소 40% 이상, 기후 위기적응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이하, 추가지원 항목의 비율은 최대 30%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 해당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성능개선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외기에 직·간접하는 창호의 경우, 창호기밀 필수포함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히트펌프 등),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기후위기적응	홍수·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역류방지밸브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누수침수 센서 등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등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변동루버,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혹한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스노우가드 등
	기타 (가뭄, 지반침하 등)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집수·여과·저장),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추가지원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및 기후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은 본문 P.49 [참고1] 참조

** 기후위기적응 기술요소는 기후재해취약성을 고려하여 적용 권장(본문 P.39 [첨부2] 참조)

II. 사업 유형별 지원기준

1 종합형 사업

- (정 의)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에너지성능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 단년도 정률지원
- (지원조건) 에너지성능개선 항목 중 최소 3개 이상(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 적용 및 기후위기적응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적용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의 경우 순공사비 이외 제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상향적용
 - 섬 지역*은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 조 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지자체 70%
- (시그니처)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종합사업지원에서 사전발굴
- 연면적·사용인원·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으며,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의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적용으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하며,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 창의적인 에너지절감 설계요소, 에너지 효율 및 생산설비, 신기술 적용 등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에너지절감 기술요소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최소 1개소 이상 적용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종합형 사업 (일반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10만원 / 3.3㎡ (252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94만원 / 3.3㎡ (352.8만원 / 3.3㎡)	70 %
종합형 사업 (시그니처 사업)	일반·소규모 건축물	서울, 중앙·공공	400만원 / 3.3㎡ (48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560만원 / 3.3㎡ (672만원 / 3.3㎡)	70 %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공사비를 사용하여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8. 12. 31.)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승인 필요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제2항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맞춤형 사업

- (정의) 건물이력, 기후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중 일부 적용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지원 방식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 단년도 정률지원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건축물

① (개보수형) 최초 준공 이후 아래의 보수 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 중 에너지성능개선 공사(순간온수기, BEMS, 기타공사 제외) 시행 이력 또는 계획이 있는 경우. 단, 전체 교체 대상 물량 중 50% 이상 진행하거나 예정인 것에 한하며, 시행 계획 미준수 시 사업 취소 가능

※ 관련 증빙 서류(관공서 개보수 이력대장, 개보수한 제품 · 기기설치 연수, 제품확인서, 거래명세서, 예산 확보 서류 등) 제출 필요

(예시1) 최초 준공 이후 창호 교체 보수 이력이 있는 경우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A) : 50 m², ② 실제 창호 보수면적(B) : 30 m²

③ 보수비율 : $B / A \times 100 = 30/50 \times 100 = 60 \%$

⇒ 맞춤형 사업 신청 가능 (단, 관련 증빙서류 필요)

(예시2) 최초 준공 이후 고효율냉난방 장치 보수 계획이 있는 경우

① 기존 실외기 용량(A) : 10 kw × 2대 = 총 20kw,

② 교체 예정 실외기 용량(B) : 10 kw × 1대 = 총 10kw

③ 보수계획비율 : $B / A \times 100 = 10/20 \times 100 = 50 \%$

⇒ 맞춤형 사업 신청 가능 (단, 관련 증빙서류 필요)

- 건축물을 증축하여 증축 외 부분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경우

② (성능개선형)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 1차에너지소요량이 200kWh/m²·y 미만으로 공사 후 에너지 절감률이 30%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그린리모델링 공사 후 1차 에너지소요량이 130kWh/m²·y 미만 건축물

③ (건물특화형) 건축물 용도별*, 기능별** 특징 등에 의해 그린리모델링 기술 요소를 일부만 수행하거나, 한 가지 요소에 특화하여 수행이 필요한 경우

- * (용도별) 전시장, 장애인시설 등 내·외부 특수 장비 등으로 마감 공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 (기능별) 한옥, 커튼월 건축물, 보안시설 등 건축물의 기능을 반영하는 경우

○ (지원한도) 지원항목별 단가 등의 차이로 최종 사업비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예정

- 소규모건축물(연면적 300㎡미만)의 경우 순공사비 이외 제경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상향적용

- 섬 지역*은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사업대상 당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 조 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지자체 70%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맞춤형사업	일반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서울, 중앙·공공	200만원 / 3.3㎡ (24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80만원 / 3.3㎡ (336만원 / 3.3㎡)	70 %
	소규모건축물 (연면적 300㎡미만)	서울, 중앙·공공	210만원 / 3.3㎡ (252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94만원 / 3.3㎡ (352.8만원 / 3.3㎡)	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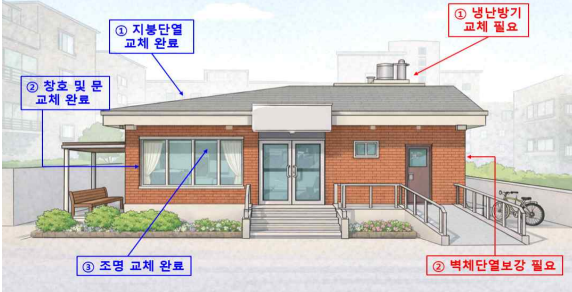
○ (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8. 12. 31.)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승인 필요

[참고] 맞춤형 사업 예시

❶ (개보수형) 최초 준공 이후 보수 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 예시❶-1 맞춤형 (에너지공사시행) 】	【 예시❶-2 맞춤형 (증축시행) 】
 (예시) 지붕단열, 창호 및 문, 조명 / 냉난방기 교체, 벽체 단열보강	 (예시) 증축된 부분의 창호, 벽체 등은 현재 법적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 증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창호, 벽체 공사 추진

❷ (성능개선형)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1차에너지소요량, 절감률 또는 자립률 등을 고려

【 예시❷-1 성능개선형 (공사전기준) 】	【 예시❷-2 성능개선형 (공사후기준) 】
 (예시) 공사 전 1차에너지소요량 190kWh/m²·년 → 공사 후 1차에너지소요량 133kWh/m²·년 (공사전 比 30% 절감)	 (예시) 공사후 1차에너지소요량 125kWh/m²·년

❸ (건물특화형) 건축물의 특징에 의해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일부만 수행하거나, 한 가지 요소에 특화하여 수행이 필요한 경우

【 예시❸-1 한옥 건물 】	【 예시❸-2 커튼월 건물 】
 (예시) 한옥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 설비기기 교체 위주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시) 커튼월 건물로 전면 창호 교체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3 군집형 사업

- (정의) 하나의 대지 또는 인접한 대지 안에 여러 동의 노후 건축물을 군집 단위로 묶어서 종합형과 맞춤형 그린리모델링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
- (지원형태) 국고보조금 / 다년도(2차) 정률지원
- (지원조건) 에너지성능개선 항목 중 최소 3개 이상(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 적용 및 기후위기적응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적용
 - ※ 군집형으로 신청하는 건물의 동수는 5동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 섬 지역*은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추가 할증 적용
 - * 「섬 발전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포함
 - 2~3동 군집형 사업의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15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107억)이며, 4~5동 군집형 사업 국비지원 한도는 최대 25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178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보조율) 사업대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기본보조율과 차등보조율 적용
 -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지자체 70%

《 지원한도 및 보조율 기준 》

사업	대상구분	사업대상기관	지원한도(섬지역)	보조율
군집형 사업	건물이 2~3동인 경우	서울, 중앙·공공	175만원 / 3.3㎡ (21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45만원 / 3.3㎡ (294만원 / 3.3㎡)	70 %
	건물이 4~5동 이상인 경우	서울, 중앙·공공	175만원 / 3.3㎡ (210만원 / 3.3㎡)	50 %
		그 외 지자체	245만원 / 3.3㎡ (294만원 / 3.3㎡)	70 %

○ (사업기간) 지원연도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 최소화)

- 사업규모 또는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월*가능

* 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이월 또는 재이월 시 중앙관서(국토교통부)의 장의 인정·승인 필요

- 국고보조금은 2차년도 사업비로 구분하여 지원(1차년도 50%, 2차년도 50%)하며, 연차별 지원 비율은 변동 불가

- 각 연차별 지원된 사업비는 정해진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상호 변경하거나 집행 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 (예시) 군집형사업 사업비 집행 기간 》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1차년도 (50%)	사업비 집행기간			
2차년도 (50%)		사업비 집행기간		

- 각 연차별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차별 집행금액에 대해 국비 보조율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음

* (1차년) 최대 '28. 12. 31. 까지 / (2차년) 최대 '29. 12. 31. 까지

《 (예시) 군집형 사업 정산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교부금액/비율		집행금액/비율		교부금액/비율		집행금액/비율	
합계	50억	100%	45억	100%	50억	100%	55억	100%
국비	35억	70%	31.5억	70%	35억	70%	35억	63.6%
지방비	15억	30%	13.5억	30%	15억	30%	20억	36.4%
비고	국비 보조율 초과 불가				국비 지원한도 초과 불가			

4 공통사항

□ 사업유형별 신청기준

- 종합형, 맞춤형, 군집형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되, 종합형과 군집형의 경우 상호 중복 신청 가능*

* 단, 이 경우 군집형의 각 건물별로 종합형으로 신청

- 종합형 중 시그니처사업의 경우, '26년 지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일반사업으로 신청 가능

□ 건물 종류별 신청범위 및 기준

- (군집건축물) 동일 필지 또는 인접 필지 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군집된 경우,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용도인 경우 신청가능

* 해당 필지 내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 (복합건축물)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건축물의 경우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신청

- 다만,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 또는 사업지원대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건축물에 지원용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신청하며, 신청 용도는 신청 면적 중 차지하는 면적이 큰 용도로 함

- (임차건축물) 임차기간이 5년 이상(2031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잔여 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하여만 신청가능(타용도 지원 불가)

* 임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계약서 및 공사 실시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서 필수 추가 제출(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중복건축물) 이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20~'25년)의 대상건축물은 재신청 불가하나, 아래의 경우 신청 가능

- 군집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에서 별도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복합건축물로서 지원받지 않은 부위 중 지원대상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 안전성 등 사전검토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사업대상선정 이후 사업취소가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확보, 유지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신청 필요

□ 추가지원 범위

- GR 관련 설비·전기·소방 부대공사의 경우, 본 사업으로 수반되는 부대 공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신설 공사(배관 등)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공사 前 종합사업지원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기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 증·개축, 대수선 등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경우, 지원 항목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그린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그린리모델링 현판을 건물에 부착(추가지원비로 활용 가능)해야 하며, 디자인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별도 제공

《참조. 그린리모델링 현판 디자인》



III. 사업추진 절차

1 운영체계 및 역할

○ (운영체계 · 역할)

- ①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 · 사업 총괄
- ② (국토안전관리원)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 ③ (중앙행정 · 공공기관 · 광역지자체) 1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또는 사업관리(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에 대한 사업관리 포함)
- ④ (기초지자체) 2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구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국토교통부)	○ 정책·사업 수립 등 총괄 ○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및 확산 추진
운영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보조사업자로 사업 기획·공고·선정·관리 등 업무 운영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보조금 교부·집행점검 ○ 그린리모델링 교육 및 홍보
사업추진기관 (중앙·공공 및 광역)	○ 1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또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 사업관리 ○ 보조금 교부 및 지방비(도비) 확보 ○ 사업변경 및 정산 검토
사업추진기관 (기초지자체)	○ 2차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추진 (사업신청, 교부신청, 사업변경, 정산 등에 대한 업무는 광역지자체를 통하여 진행 필요) ○ 보조금(지방비) 확보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 사후관리

2 신청절차

단계	주관 기관	주요 내용	일 정
사전공고 및 희망 건축물 접수	사업 대상 기관	· 본사업 공모 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검토 등 사업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 대상 모집 · (중양·공공)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전자문서 신청 · (기초지자체) 첨부 서식을 참조하여 기초지자체의 신청 취합 후 광역시·도에서 신청승인	'25.11.7(금) ~ '25.12.19(금)
↓			
사업 공고	GR 창조센터	· '26년도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26. 3월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GR 창조센터	· 그린리모델링 사업신청 대상 공사 전 종합 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에너지절감효과 분석 등)	'26. 1 ~4월
↓			
본사업 공모	GR 창조센터, 종합사업지원 기관	· '26년도 그린리모델링 본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보고서 시스템 입력 (공사 개요, 공사요소, 공사비 등)	'26. 4월
↓			
사업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컨설팅 보고서를 활용하여, 공사항목 및 사업비, 지방비 매칭 등 검토 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등 관련양식 작성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신청절차는 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26. 4 ~5월
↓			
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 GR 창조센터	· 가이드라인 배점표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예비순위* 선정 * 사업취소 등 발생 시 선정된 예비순위에 따라 대상 추가 선정 · 대상선정 결과 사업대상기관 알림	'26. 5월
↓			
보조금 신청	사업 대상 기관	· 대상확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 e나라도움 : 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26. 6월
↓			
보조금 교부	GR 창조센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 확인 후 보조금 교부*(1,2차 분할) * 교부절차 : 국토교통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대상기관 또는 (광역시·도→기초지자체) **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가 교부금 지급	'26. 7월

* 그린리모델링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방법

□ 희망건축물

- 종합형(일반사업*), 맞춤형, 군집형사업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수***

* '26년 종합형(시그니처) 사업은 '25년 종합사업지원기관에서 희망건축물 사전발굴 완료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중앙·공공기관: 직접 신청, 기초지자체: 광역시·도 승인 후 신청

□ 본 사업

- (신청방법)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수(희망건축물 접수와 동일)
 - (모집기간) 별도 공지예정
 - (신청절차)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앙·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운영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하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시스템을 통한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시 광역시·도의 승인이 필요
 - 시그니처사업 : '25년 종합사업지원기관에서 사전 발굴한 대상으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
- ※ '26년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컨설팅 건축물에 한하여 본 사업공모 참여 가능

IV. 대상선정 기준

1 공통 사항

- (선정기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검토 후 선정
- (유사·중복검증)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에 따라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를 기준으로 검토를 수행
- (공사예정여부) 사용자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외 사업(내진보강, 기능보강, 유지보수 등) 예정의 경우
* 종합적 시공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 사례 P.63 [참고7] 참조
- (지원대상결정) 사업유형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국고 보조금을 매칭하여 '26년도 예산한도에서 지원대상을 결정
- (선정절차) 사업접수(대상기관) → 사업유형별 우선순위산정·보고 (배점기준표, GR센터) → 사업 적정성, 지방비 부담능력 등 고려 선정 (국토부, 심의위원회)

2 종합형 사업

□ 일반사업

- 정량평가 100%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에너지절감 요소와 건축물 노후도, 사업성 및 적정성 등을 배점 기준표(표1 참고)에 따라 계량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
- 배점기준표는 그린리모델링 요소 적용 계획 및 건축물의 노후도·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80점, 사업여건 20점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가점 13점 및 감점 10점 부여

- 가점을 받은 경우, 사업 추진시 해당 항목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대상기관에서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을 신청요망

○ 동일 점수의 경우 아래의 순서 기준으로 우선 선정

- ① 공사전 대비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량이 많은 경우 우선
- ② 공사전 대비 1차에너지소요량의 절감률이 높은 경우 우선
- ③ 신규 지원대상용도*에 따라 우선
 - * 기타교육시설(유치원/학원·교습소/독서실·기원), 노인요양시설, 기타노유자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노숙인시설/사회복지관자활센터/성매매피해지원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기타공공시설(어린이회관), 기타전시장, 수련시설
- ④ 기후위기 적응 기술 반영 개수가 높은 경우 우선
- ⑤ 사업대상기관에서 소유하는 건축물 우선
- ⑥ 그린리모델링 요소 합산 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
- ⑦ 사업관리 감점이 없는 경우 우선
-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1. 종합형(일반사업) 정량평가 기준》

※ 본사업 공고 시 변동 가능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그린 리모델링 요소	단열 ¹⁾	20점	벽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지붕 (7점)	7	5	3	1	
				75%이상~ 100%이하	50%이상~ 75%미만	25%이상~ 50%미만	항목적용~ 25%미만	
			바닥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창호	16점	창 ²⁻¹⁾ (10점)	10	8	6	4	2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20%미만
			문 ²⁻¹⁾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일사 조절장치 ²⁻²⁾ (3점)	3	2	1		
				60%이상~ 100%이하	30%이상~ 6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설비 ³⁾	15점	냉방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난방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급탕 (5점)	5	4	3	2	1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30%이상~ 40%미만	항목적용~ 30%미만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신재생 ⁴⁾	5점	태양광 등	5 20%이상	4 15%이상~ 20%미만	3 10%이상~ 15%미만	2 5%이상~ 10%미만	1 항목적용~ 5%미만
	환기 ⁵⁾	5점	폐열회수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	5 80%이상~ 100%이하	4 60%이상~ 80%미만	3 40%이상~ 60%미만	2 20%이상~ 40%미만	1 항목적용~ 20%미만
	전기 ⁶⁾	2점	고효율 조명 LED	2 적용	0 미적용			
	BEMS 등 ⁷⁾	2점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적용	2 적용	0 미적용			
	에너지 절감률 ⁸⁾	10점	요소 적용시 에너지절감률	10 35% 이상	8 30%이상~ 35%미만	6 25%이상~ 30%미만	4 20%이상~ 25%미만	2 20% 미만
	인정 ⁹⁾	5점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 시					
	소계	80점						
	사업여건 (노후도 및 사업 적정성)	소유 ¹⁰⁾	5점	건축물 직접 소유시(건축물대장 증빙)				
3점			건축물 임차시(계약서 증빙)					
노후도 ¹¹⁾		10점	1993년 이전 건축허가					
		8점	1994~2000년 건축허가					
		6점	2001~2008년 건축허가					
		4점	2009~2010년 건축허가					
		2점	2011년 이후 건축허가					
사업 효율성 ¹²⁾		5점	5 120이상	4 120미만~ 90이상	3 90미만~ 60이상	2 60미만~ 30이상	1 30미만~ 0이상	
소계		20점						
총계		100점						
가점	안전성 ¹³⁾	5점	5년 내 안점점검 결과*** (보통, 미흡) 해당 시					
	사업 적극성	1점 ¹⁴⁻¹⁾	제5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에서 각 분야별 우수평가를 받은 지자체					
		2점 ¹⁴⁻²⁾	사업완료 후 관리를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 예정 시					
		2점 ¹⁴⁻³⁾	지방비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사업대상기관에서 확보한 경우					
	기후위기 사급성 ¹⁵⁾	5점	특별재난지역 또는 재난사태 선포지역의 경우 * 단, 해당 지역에 맞는 기술요소 2개 적용하는 경우 반영					
	소계	15점						
감점	사업 관리 ¹⁶⁾	-5점	이전('20~'25년)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단순취소 사업이 있을 시					
		-3점	3	2	1			
			임의사업변경 건축물 10개 이상	임의사업변경 건축물 10개 미만~5개 이상	임의사업변경 건축물 5개 미만~1개 이상			
	-2점	공사완료('20~'25년) 건축물 중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해당 기초지자체						
소계	-10점							

《배점기준 해설》

-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외벽, 최하층 바닥, 최상층 반자 또는 지붕 각각의 면적 대비 실제 단열공사를 적용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단, 최하층 바닥의 경우, 최하층 바닥부분만 아니라, 각층 바닥에 난방공사를 시행할 경우도 포함하며, 이때, 기존 전기저항식 바닥난방을 교체하는 경우(신설 제외)도 포함

(예시) 단열배점 산정예시

- ① 거실의 외벽면적(A) : 200 m², 최상층 지붕 면적(B) : 100 m², 최하층 바닥 면적(C) : 100 m²
 ② 실제 외벽 단열공사 면적(A') : 200 m², 최상층 지붕 면적(B') : 50m², 최하층 바닥 면적(C') : 40m²
 ③ 벽체단열 : $A' / A \times 100 = 200 / 200 \times 100 = 100\% \rightarrow 10\text{점}$
 지붕단열 : $B' / B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5\text{점}$
 지붕단열 : $C' / C \times 100 = 40 / 100 \times 100 = 40\% \rightarrow 2\text{점}$
⇒ 단열 총점 : 17점

- 2-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거실의 창 및 문 각각의 면적 합계 대비 실제 창 및 문 공사를 적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 공사 시 창호 둘레에 기밀 시공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며, 정산 시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제출 필요

- 2-2) 남측 또는 서측 방향의 창호면적 대비 외부 차양장치(내부 블라인드 제외)를 설치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예시) 창호 배점 산정예시

가. 창 배점

-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90 m²,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 전체면적 : 10 m²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창 총합계면적(A) : 총 100 m²
 ② 실제 창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50 m²
 ③ $B / A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6\text{점}$

나. 문 배점

- ① 외기에 직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17 m², 외기에 간접 면하는 문 전체면적 : 3 m² → 외기에 직·간접으로 면하는 문 총합계면적(A) : 총 20 m²
 ② 실제 문 공사 면적(B): 직접면하는 창 17 m²
 ③ $B / A \times 100 = 17 / 20 \times 100 = 85\% \rightarrow 3\text{점}$

다. 일사조절장치 배점

- ① 남측 창호의 전체면적 : 80 m², 서측 창호의 전체면적 : 20m² → 남측·서측 창호의 총합계 면적(A) : 총 100 m²
 ② 남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 50 m², 서측 외부 차양장치 면적 : 0 m² → 남측·서측 외부 차양장치 총합계면적(B) : 총 50 m²
 ③ $B / A \times 100 = 50 / 100 \times 100 = 50\% \rightarrow 2\text{점}$

⇒ 창호 총점 : 11점

- 3) 기존 설비 장비의 내구연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존 설비 장비 각각의 총용량 대비 교체되는 설비 장비의 용량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다만, 추가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설비 장비 및 교체되는 설비 장비 용량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냉난방기 겸용 장비에 대하여는 각각 반영하여 산정. 또한, 지역난방의 경우, 열교환기 교체도 포함

(예시) **설비공사 배점 산정예시**

- ① 에어컨 사용기한 6년: 실외기 용량 10 KW × 2대,
→ 기존 냉난방장치의 용량(A) : 총 20KW
- ② 교체되는 장비 1대 (B) : 10KW
- ③ $B / A \times 100 = 10 / 20 \times 100 = 50\% \rightarrow 3\text{점}$

- 4) 신규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립률 비율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
- 5)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공조기에 대한 기술요소를 신규로 적용할 경우, 해당 기술요소가 적용되어야 할 거실의 총 바닥면적 대비 실제 기술을 적용하는 실의 바닥 면적 비율로 배점 산정

(예시) **환기 배점 산정예시**

- ① 교사실 : 10 m², 보육실 : 60 m², 유희실 : 30 m²
→ 폐열환기형 환기장치가 적용되어야 할 바닥면적 총합계면적(A) : 총 100 m²
- ② 실제 적용 기술 면적(B) : 보육실 60 m²
- ③ $B / A \times 100 = 60 / 100 \times 100 = 60\% \rightarrow 4\text{점}$

- 6) 고효율 조명 LED 설치 유무에 따라 배점 산정. 기존 LED를 교체하는 경우 제외 하며, 전체 조명밀도는 14 w/m²미만이 되도록 설계

(예시) **고효율조명(LED) 배점 산정예시**

가. 기존 형광등에서 LED 교체 시 → 2점

- 7)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개선 항목 중 BEMS(Light BEMS, 원격검침기 포함)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배점 산정
- 8)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전·후(안)의 에너지요구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에 대한 비율로 배점을 산정

(예시) **에너지절감률 배점 산정예시**

가. 개선전 1차에너지소요량 : 220kWh/m²*y, 개선후 1차에너지소요량 : 180kWh/m²*y
→ 에너지 절감률 : 18%
⇒ **에너지절감률 점수 : 2점**

- 9)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예정을 선택할 경우 배점 산정. 공사 후 1개월 이내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녹색건축물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승인 필요
- 10) 사업대상시설의 소유여부에 따라 배점 산정하며, 임차의 경우, 계약서 및 소유주의 공사 진행 동의서 필수 제출
-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지역, 부위별 열관류율 변경 기준
- 12)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kWh/년) ÷ 총사업비(백만원)
* 단, 추가투입되는 지방비를 산정 시 제외
-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상의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 결과(안전등급 : C,D 또는 보통,미흡)에 따라 가점 추가

- 14-1) 2025년 지자체 녹색건축평가('24년 기준)에서 “녹색건축확산, 에너지성능, 정책 이행도” 각 분야에서 우수로 평가받은 지자체인 경우. 단, 분야별 중복인정 되지 않음(평가결과는 <https://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 가능)
- 14-2) 그린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전기, 가스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계량기 보급사업 실시할 경우, 참여예정인 건축물
- 14-3)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경우

(예시) **추가 사업비 확보 예시(서울의 경우)**

가. 그린리모델링 총 사업비 5억 →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나. 사업대상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0.5억 추가 확보 → 국비 2.5억, 지방비 3억 투입

⇒ **가점 2점 획득**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자연재난으로 한정)으로 선포된 지역('24 ~ '25년)
- 16) '25년 심의위원회에서 단순 취소 또는 임의사업변경이 확인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또는 '20년~'25년 사업 중 공사완료 후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기초지자체의 경우(단, 광역단체 및 중앙·공공 소속 건축물의 경우, 그 단위별 관리 건축물에 대한 감점 시행)

□ 시그니처 사업

○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시그니처사업 미선정 시, '26년 지원용도에 한하여 일반사업 선정 가능

- (정량평가) 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의 40% 점수
- (정성평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동일 순위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우선 선정

《 표2 종합형(시그니처) 정성평가 기준》

※ 본사업 공고 시 변동 가능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타당성 (60점)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적정성	10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10
		그린리모델링 지역확산 거점의 활용성	10
	사업의 우수성	컨설팅안의 독창성 및 창의성	10
		컨설팅안의 지역특성 반영 적정성	10
		친환경·선도기술 적용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	사업의 현실성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의 기대효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속가능성	10
		사업 홍보효과의 우수성	10
합 계			10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3 맞춤형 사업

○ 정량평가 30% + 정성평가 70%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배점기준표는 그린리모델링 요소 적용 계획 및 건축물의 노후도·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린리모델링 요소 20점, 사업여건 10점으로 구성되며, 추가적으로 가점 3점 및 감점 5점 부여
- (정성평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 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건물특화형 맞춤형 사업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요소는 평가하지 않으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정

* 환산 시 정량평가의 사업여건 점수만 반영하고, 가·감점은 별도 합산

(예시) 정량평가 : 노후도 5점, 사업효율성 5점, 가점 2점, 감점 -4점 / 정성평가 : 총 60점
 합산점수 : (사업여건의 정량평가 점수 + 정성평가 점수)×1.25+ 가점 - 감점
 = (사업여건 10점 + 정성평가 60점)×1.25 + 가점 2점 - 감점 4점 = **총 85.5점**

○ 동일 순위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순으로 우선 선정

《 표3. 맞춤형 사업 정량평가 기준》 ※ 본사업 공고 시 변동 가능

구 분		총점	배점기준(적용비율)				
그린 리모델링 요소	에너지 성능개선	3점	단 열	벽·지붕·바닥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창 호	직·간접 외기 창·문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설 비	냉방·난방·급탕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환 기	폐열회수형환기장치·공조기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3점	신재생	태양광·지열·풍력 등 신재생 기술 한 개 이상 적용시			
	기후위기 적응	2점	기후위기 적응기술	기후위기적응 기술요소 중 한 개 이상 적용 시			
	에너지 절감률	3점	에너지 절감률	3	2	1	
				35% 이상	30% 이상 ~ 35% 미만	30% 미만	
소계	20점						
사업여건 (노후도 및 사업 적정성)	노후도	5점	1993년 이전 건축허가				
		4점	1994~2000년 건축허가				
		3점	2001~2008년 건축허가				
		2점	2009~2010년 건축허가				
		1점	2011년 이후 건축허가				
	사업 효율성	5점	5	4	3	2	1
			120이상	120미만~ 90이상	90미만~ 60이상	60미만~ 30이상	30미만~ 0이상
소계	10점						
가점	사업 적극성	1점	제5회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에서 각 분야별 우수평가를 받은 지자체				
		2점	지방비 매칭 비율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비를 사업대상기관에서 확보한 경우				
	소계	3점					
감점	사업 관리 ¹⁶⁾	-2점	이전('20~'25년)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초지자체 대상 중 단순 취소 사업이 있을 시				
		-2점	'25년 GR 심의위원회에서 임의사업변경이 확인된 기초지자체 경우				
		-1점	공사완료('20~'25년) 건축물 중 중요재산의 처분을 임의로 시행한 해당 기초지자체				
	소계	-5점					

* 가·감점은 기본 점수 총점 30점 외 추가적으로 부여

** 사업여건, 가점 및 감점 기준은 종합형(일반사업) 배점기준과 동일

《표4. 맞춤형 사업 정성평가 기준》

※ 본사업 공고 시 변동 가능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적정성 (70점)	사업 타당성 (40점)	건물 현황 및 여건 타당성		10
		맞춤형 사업의 신청 조건*의 타당성 * 개보수형, 성능개선형, 건물특화형		15
		맞춤형 사업의 필요성		15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30점)	적용 기술요소*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 건물 특성을 반영한 종류, 범위 등		10
		에너지 성능 개선 계획(목표설정)의 적절성		10
		사업비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10
합 계				70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10	8	6	4	2

4 군집형 사업

○ 정량평가 40% + 정성평가 60%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종합형(일반사업) 배점기준표 점수의 40% 점수

- (정성평가)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예시) A, B 동 2개인 경우 : (정량평가) A동 60점, B동 55점 / (정성평가) 50점
 합산점수 : (A동 정량평가 점수 + B동 정량평가 점수) / 2 × 0.4 + 정성평가 점수
 = (A동 60점 + B동 55점) / 2 × 0.4 + 정성평가 50점 = **총 73점**

- 동일 순위일 경우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순으로 선정

《표5. 군집형 사업 정성평가 기준》

※ 본사업 공고 시 변동 가능

심사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사업 적정성 (60점)	사업 타당성 (20점)	건물 현황 및 여건 타당성		10
		군집형 사업의 필요성 * (참고) 중앙식 설비기기 / 입면 디자인 일체성 등		10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40점)	군집단위 공사 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10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기대효과		10
		재원조달(사업비 확보) 가능성 * 연도별로 나누어 교부되는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용 확보 등		10
		사업 추진 기간에 대한 적정성		10
		합 계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V.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사항

1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사업선택 후 교부신청서 작성·제출 → ⑦ 보조금교부(1차 80%, 2차 20% 분할 교부) → ⑧ 사업비 변경(필요시) → ⑨ 사업비 정산 → ⑩ 정산잔액 반납

* 군집형 사업은 다년도(2년) 사업으로 각 연도별로 보조금 교부 신청·정산 필요

2 보조금 관리

- (일반사항)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목적*을 확인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기후변화 적응력 확보

- (보조사업 집행)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집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전용) '26년도 사업선정기관(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내에서 사업비 전용** 가능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 - 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 단,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승인 절차 진행 필요하며, 단순 사업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비는 반환이 원칙으로 전용불가

- (보조사업 변경) 보조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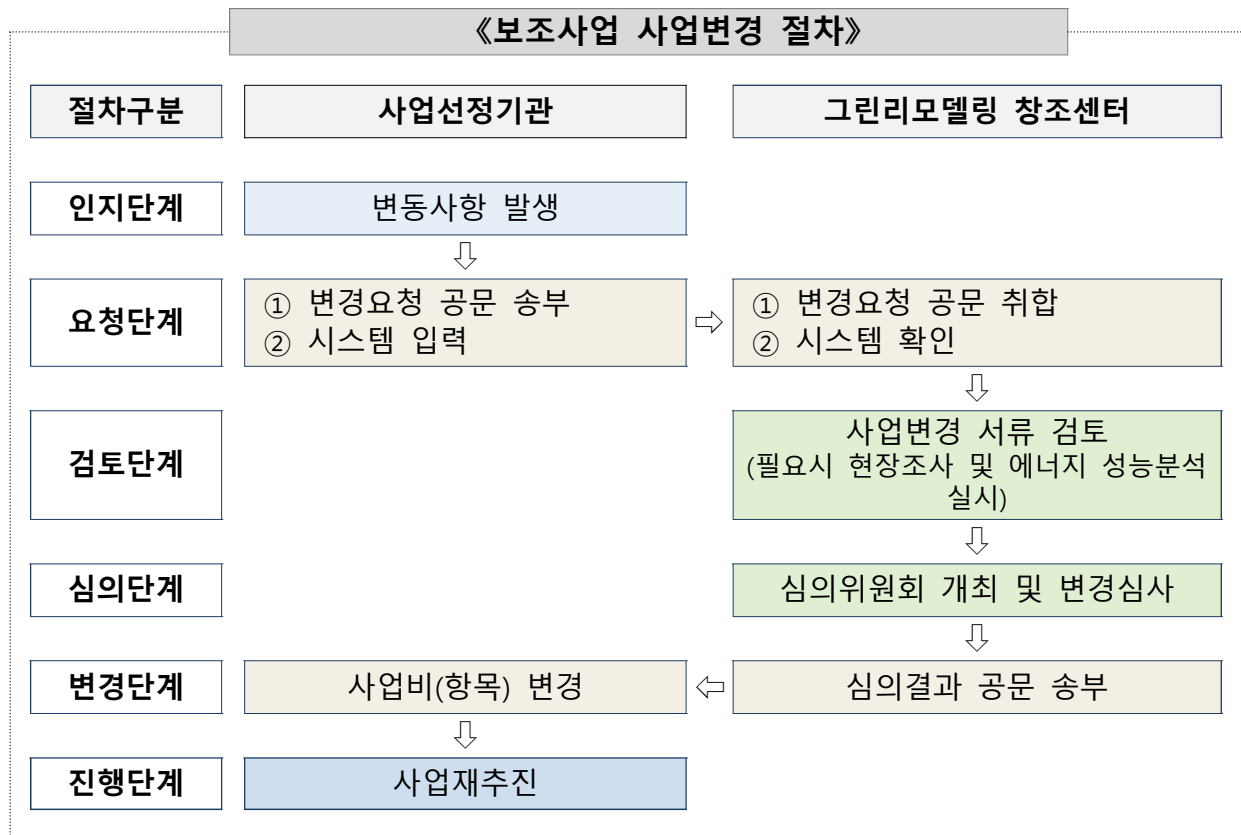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 취소) 대상선정 이후 사업취소는 불가하며, 「보조금법」 제21조에 따른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취소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사전 승인 필요 (임의 추진 시 보조금 반환 등 처분 결정)

사정의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사항

1. 대상 선정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 구역 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상 선정 이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아 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3. 대상 선정 이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4. 대상 선정 이후 대상 시설물의 사용자 수의 변화에 따라 폐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취소의 사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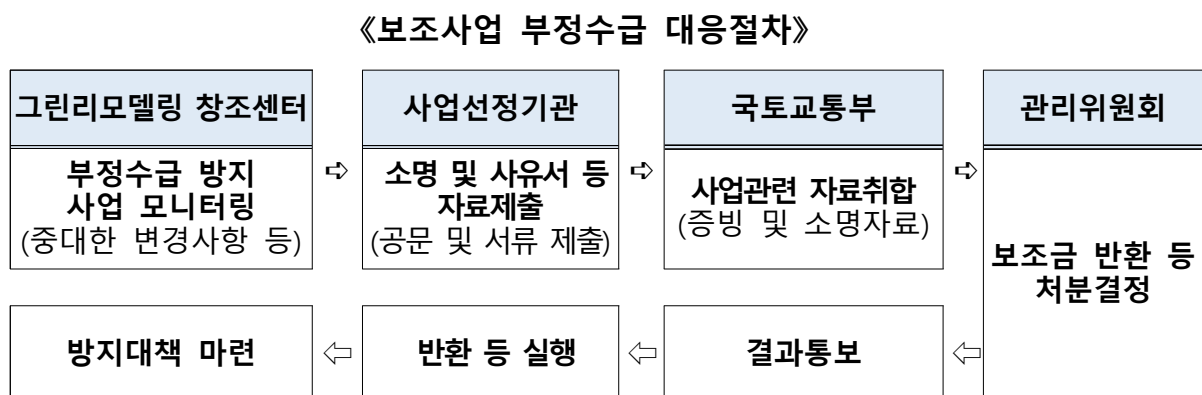
- (사업변경 절차) 국고보조사업 내용의 변경은 사전에 아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변경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부적합 판단 시 변경요청이 거부될 수 있음

-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법」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의 규정된 부정수급 방지 및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분을 결정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내 절차를 준용

3 보조금 정산

- 「보조금법」 제27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회계연도 후 지정기한 내 제출**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작성

** [운영지침-7호 서식] 참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 세부방법 및 절차는 P.55 [참고4] 참고

- 사업선정기관은 공사 완료 시 각 권역별 종합사업지원 전문기관에 **준공 후 현장점검 요청**하여야 하며,

- 최종 공사도면, 공사내역서, 관련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GR 관리시스템 정산보고서 제출 및 e나라도움* 정산실시**

*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정산실시하며, 정산 시 광역승인 必

**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회계검증 수수료 미지원)

-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정산 시 인정된 총금액에 대하여 사업 선정 당시의 **국고 보조율 기준***으로 정산하며,

* 국고보조율 : 서울특별시, 중앙공공기관 50% 및 그 외 지자체 70%

(예시) 국고보조율이 70%인 경우

① 선정당시 총 사업비 : 10억 (국비 7억, 지방비 3억)

② 정산시 인정받은 총 사업비 : 8억 → 국비 5.6억, 지방비 2.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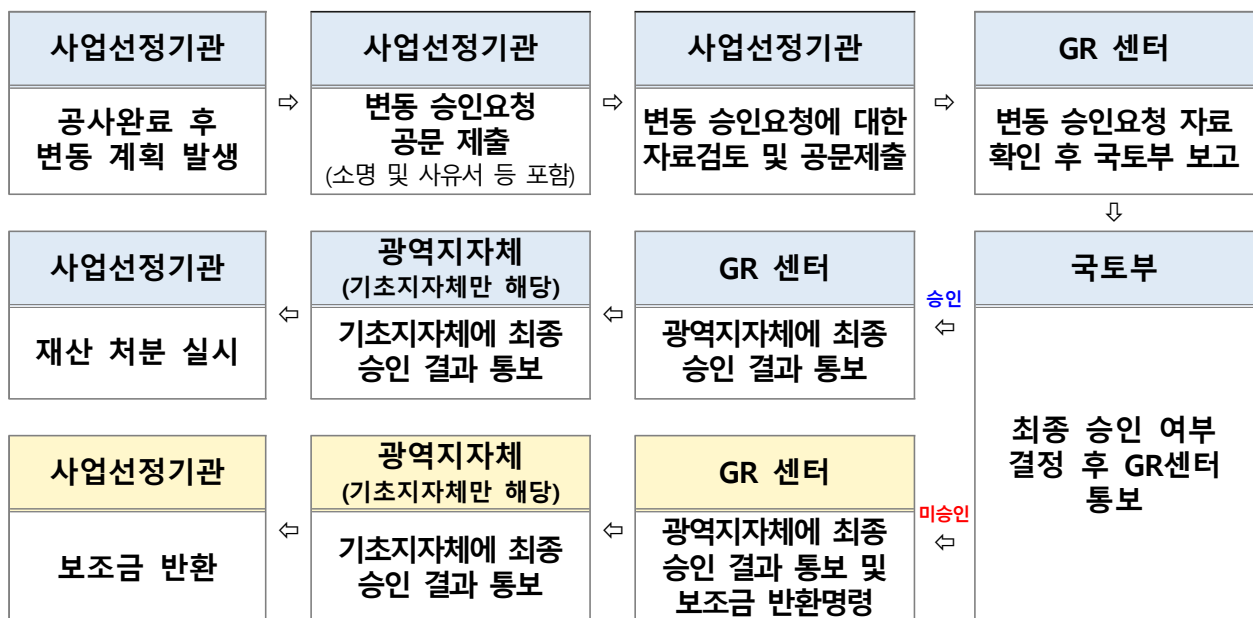
⇒ **국비 반납금액 : 1.4억 반납**(이자 및 수익금 별도 산정)

- 정산잔액 등에 대하여 사업비 잔액과 사업예산에서 발생한 이자로 분리하여 지정계좌에 반납(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에너지성능개선 및 기후위기적응 기술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보조금의 목적외사용으로 불인정 될 수 있음([참고1] 참고)

4 중요재산 관리

- (보고 및 공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6조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 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보고
 - 이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준공 후 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 (처분의 제한)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 후 사업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용도 외 사용, 휴·폐업,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및 철거의 행위를 5년 동안 제한
 - 보조사업 후 처분제한 기간 내에 재해·재난에 따른 건축물의 기능상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철거 등 특이사항에 따른 처분 전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 * 지자체가 소유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전협의 가능, 관리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
- 처분의 제한 관련 세부기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르며, 임의 처분으로 판단 시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제재부과금 징수 등 처분을 결정

《사업완료 후 대상지 변동사항 승인절차》



※ 중앙·공공의 경우, 국토부로 직접 공문 제출 / '20 ~ '25년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절차 적용

Ⅵ. 사업지원 및 관리 등

1 사업선정기관

- (역할) 설계부터 공사완료 후 정산, 사후관리까지 그린리모델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절차별 관리 철저 필요**
- (설계 및 공사계약) 사업선정기관에서 그린리모델링 설계, 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사·시공사 등을 선정하여 용역계약* 체결
 -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용역시행
 - ** 사업추진 시 사업선정기관이 직접 추진해야하며 민간 위탁 등 보조금 위탁 행위는 금지
-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진행**
-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필요건축물의 경우 GR종합사업지원 업체에서 업무 지원가능
- 에너지성능개선 기술요소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가이드라인」 및 「그린리모델링 품질·안전 가이드라인」참조하여 공사 수행(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 게시)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양식을 사업별로 변경 후 활용가능
 - ※ 설계공모가 필요한 경우(설계비 1억이상) 공모대행비에 대한 국비 활용 가능
- (용역 발주·관리) 용역계약 후 착수 시 선급금(용역비의 70% 이내) 지급 후 준공 시 잔액(선급금 제외) 지급 등 설계 및 공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과 목적에 따라 완공될 수 있도록 발주·관리
- (품질관리) 설계·시공 시 당초 계획한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마련 및 관리 감독 철저
- 에너지성능개선 기술 요소(단열공사, 창호공사 등)의 기밀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정 및 단가 반영
- 설계 시 에너지공사와 관련된 기본 설계 도서 작성 권장([참고3] 참고)

- (공정관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요청에 따라 사업진행단계 및 담당자 등 사업 현황의 주기적*인 현행화에 적극 협조
 - * GR 관리시스템을 통해 월별 세부추진 현황 제출하며, 시그니처 사업의 경우 매작수달마다 추진 별도 제출 (p46. [서식1] 참고)
- (변동관리) 사업관리 중 설계 및 공사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게 변동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고*
 - * [운영지침-제6호 서식]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자 공문 제출 시 사업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중대한 변경여부 판단
- (사업결과) 보조금 정산 시 사업 실적보고서, 설계도서, 지원항목의 세부내용*에 대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
 -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내용 기준 [참고1] 참조
- (사후관리) 준공 후 5년간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요청에 따라 공사 전·후 전기, 가스, 난방 등 실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제공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역할) 사업선정기관이 수행하는 설계·공사 및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지원 및 관리 수행
- (사업지원) 사업수행 중 기술적 지원 및 자문 필요시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을 통해 ONE-STOP 솔루션 제공
 - ※ 사업선정기관은 각 권역별 종합사업지원 수행기관의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행점검)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금 집행 및 사업신청에 대한 수행내용 확인을 위하여 사업선정기관을 대상으로 수행점검 실시 예정 (세부 일정 및 대상지는 별도 통보)
- (사업평가) 그린리모델링 분야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전·후 에너지소요량 절감률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안전점검 실시 예정

VII. 유의사항

- (총괄부서) 사업 특성을 고려, 사업선정기관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총괄부서를 반드시 지정하고 내부적 협조체계 구축하여 운영
 - * 지자체가 사업선정기관인 경우,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전체 총괄부서 지정 필요
 - ** 총괄부서는 복수 부서가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총괄 관리 및 조정하는 역할 수행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정산 등 검토·관리 / 사업 이행현황 관리 등)
 - *** 사업 신청 시 신청서에 총괄부서 및 담당자 기재 필수
- (사업추진) 모든 사업추진 관리*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관리 시스템 통하여 관리되므로,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진행 필수
 - * 매월 세부추진 일정, 단계별 관련 자료 보고 등
- (사업관리) 사업 선정 이후 적용 기술요소 임의변경,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미실시 등은 「보조금법」에 따라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등의 후속 조치실시 가능
- (사업등록) 당해 연도의 사업구조를 신규로 생성 시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보조사업명을 통일하여 작성 및 이전 연도 사업과 통합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보조사업명	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00시-종합형-경로당 00동)
보조형태	정률로 체크 (정액사업 아님)

- (사업변경) 사업변경 시 종합사업지원 전문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작성하여 그린리모델링센터로 사업변경 신청
 - 검토의견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시에도 사업변경 신청 필요
- (사업이월) 이월 시, e호조 시스템 각 부서의 예산팀과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이월금액 신청 및 편성해야 하며, 추가 집행으로 이월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정정 요청 필요
 - 해당연도에 사업구조(보조사업 생성-확정내시) 생성이 필요

- 지자체의 불용된 예산은 재편성 불가
- 사고 이월 시, 지자체 내부 협의 필요
- (실적보고서)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정하는 기한* 까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필요
 - * 중앙행정·공공기관 :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 지방자치단체 : 실적보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장기간 지연시킬 경우, 추후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불이익 등이 있으므로 선정된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①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도서관·공립도서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이하 “도서관”)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 ②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공립유치원(이하 “기타교육시설(유치원)”)
 - ③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 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하 “기타교육시설(직업훈련소)”)
 - 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이하 “기타교육시설(학원교습소)”)
 -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독서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4호타목에 따른 기원(이하 “기타교육시설(독서실·기원)”)
 - ⑦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이하 “경로당”)
 - ⑧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이하 “노인요양시설”)
 - ⑨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하 “노인복지시설”)

- ⑩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아동전용시설·지역아동센터·협동돌봄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보장원·자립지원전담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기타노유자시설(아동복지시설)”)
- ⑪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복합노인복지시설(이하 “기타노유자시설(복합노인복지시설)”)
- ⑫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제5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장애인시설)”)
- 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 ⑭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노숙인시설)”)
- ⑮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 ⑯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자활센터)”)
- 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성매매피해지원시설)”)
- 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성폭력피해보호시설)”)
- 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

- ⑳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이하 “사회복지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한다.
- 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한다.
- ㉒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제외한다.
- ㉓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를 제외한다.
- 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이하 “사회복지시설(북한이탈주민지원시설)”)를 제외한다.
- 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사목에 따른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이하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이하 “기타공공시설(주민공동시설)”)를 제외한다.
- ㉖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7호제다목에 따른 어린이회관(이하 “기타공공시설(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이하 “기타공공시설(어린이회관)”)를 제외한다.
- ㉗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에 따른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및 제5호제라목에 따른 전시장(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이하 “기타 전시장”) 공연장, 전시장(이하 “기타 전시장”)를 제외한다.
-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박물관은 제외
- 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이하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를 제외한다.
- * 단, 건물 동별 연면적 3,000㎡ 이상 지원불가

첨부2

지역별 기후위기 취약성

* 취약재해 순위는 ‘국립환경과학원 기후위기취약성 도구(<https://nier.go.kr/vestap>)’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기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연번	시도	시군구	취약재해_1순위	취약재해_2순위	취약재해_3순위
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산사태	폭염	한파
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산사태	폭염	한파
3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사태	폭염	한파
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산사태	한파	폭염
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산사태	폭염	한파
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한파	산사태	폭염
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산사태	폭염	한파
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파	산사태	폭염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폭염	한파	산사태
10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한파	산사태	폭염
1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한파	산사태	폭염
1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파	산사태	폭염
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산사태	폭염	한파
14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한파	산사태	폭염
1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한파	산사태	폭염
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산사태	한파	폭염
1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산사태	한파	폭염
1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산사태	한파	폭염
19	경기도	가평군	산사태	한파	폭염
20	경기도	고양시	폭염	산사태	한파
21	경기도	과천시	산사태	폭염	한파
22	경기도	광명시	폭염	산사태	한파
23	경기도	광주시	산사태	폭염	한파
24	경기도	구리시	폭염	산사태	한파
25	경기도	군포시	폭염	산사태	한파
26	경기도	김포시	폭염	산사태	한파
27	경기도	남양주시	산사태	폭염	한파
28	경기도	동두천시	산사태	폭염	한파
29	경기도	부천시	폭염	산사태	한파
30	경기도	성남시	폭염	산사태	한파
31	경기도	수원시	폭염	산사태	한파
32	경기도	시흥시	폭염	산사태	태풍
33	경기도	안산시	폭염	산사태	한파
34	경기도	안성시	폭염	한파	산사태
35	경기도	안양시	폭염	산사태	한파
36	경기도	양주시	산사태	폭염	한파
37	경기도	양평군	산사태	폭염	한파

연번	시도	시군구	취약재해_1순위	취약재해_2순위	취약재해_3순위
38	경기도	여주시	폭염	산사태	한파
39	경기도	연천군	산사태	폭염	한파
40	경기도	오산시	폭염	산사태	한파
41	경기도	용인시	폭염	산사태	한파
42	경기도	의왕시	폭염	산사태	한파
43	경기도	의정부시	산사태	폭염	한파
44	경기도	이천시	폭염	산사태	한파
45	경기도	파주시	폭염	산사태	한파
46	경기도	평택시	폭염	산사태	한파
47	경기도	포천시	산사태	폭염	한파
48	경기도	하남시	폭염	산사태	태풍
49	경기도	화성시	폭염	산사태	한파
50	경상남도	거제시	산사태	폭염	태풍
51	경상남도	거창군	폭염	산사태	한파
52	경상남도	고성군	폭염	산사태	태풍
53	경상남도	김해시	폭염	산사태	홍수
54	경상남도	남해군	폭염	산사태	태풍
55	경상남도	밀양시	폭염	한파	산사태
56	경상남도	사천시	폭염	산사태	태풍
57	경상남도	산청군	폭염	산사태	한파
58	경상남도	양산시	폭염	산사태	한파
59	경상남도	의령군	폭염	산사태	한파
60	경상남도	진주시	폭염	산사태	한파
61	경상남도	창녕군	폭염	산사태	한파
62	경상남도	창원시	폭염	산사태	한파
63	경상남도	통영시	폭염	산사태	태풍
64	경상남도	하동군	폭염	산사태	태풍
65	경상남도	함안군	폭염	산사태	한파
66	경상남도	함양군	폭염	산사태	한파
67	경상남도	합천군	폭염	산사태	한파
68	경상북도	경산시	폭염	한파	산사태
69	경상북도	경주시	폭염	한파	산사태
70	경상북도	고령군	폭염	한파	산사태
71	경상북도	구미시	폭염	한파	산사태
72	경상북도	김천시	폭염	한파	산사태
73	경상북도	문경시	폭염	한파	산사태
74	경상북도	봉화군	폭염	한파	산사태
75	경상북도	상주시	폭염	한파	산사태
76	경상북도	성주군	폭염	한파	산사태
77	경상북도	안동시	폭염	한파	산사태
78	경상북도	영덕군	폭염	산사태	한파
79	경상북도	영양군	폭염	한파	산사태

연번	시도	시군구	취약재해_1순위	취약재해_2순위	취약재해_3순위
80	경상북도	영주시	폭염	한파	산사태
81	경상북도	영천시	폭염	한파	산사태
82	경상북도	예천군	폭염	한파	산사태
83	경상북도	울릉군	산사태	폭염	태풍
84	경상북도	울진군	폭염	산사태	한파
85	경상북도	의성군	폭염	한파	산사태
86	경상북도	청도군	폭염	한파	산사태
87	경상북도	청송군	폭염	한파	산사태
88	경상북도	칠곡군	폭염	한파	산사태
89	경상북도	포항시	폭염	산사태	한파
90	광주광역시	광산구	폭염	산사태	한파
91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	산사태	한파
92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산사태	한파
93	광주광역시	북구	폭염	산사태	한파
94	광주광역시	서구	폭염	산사태	한파
95	대구광역시	군위군	폭염	한파	산사태
96	대구광역시	남구	폭염	한파	산사태
97	대구광역시	달서구	폭염	한파	산사태
98	대구광역시	달성군	폭염	한파	산사태
99	대구광역시	동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0	대구광역시	북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1	대구광역시	서구	폭염	한파	홍수
10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3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	한파	홍수
10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5	대전광역시	동구	폭염	산사태	한파
106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7	대전광역시	유성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8	대전광역시	중구	폭염	한파	산사태
109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산사태	홍수
110	부산광역시	금정구	폭염	산사태	태풍
111	부산광역시	기장군	폭염	산사태	태풍
112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	폭염	태풍
113	부산광역시	동구	산사태	폭염	태풍
114	부산광역시	동래구	폭염	산사태	홍수
1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폭염	산사태	홍수
116	부산광역시	북구	폭염	홍수	산사태
117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산사태	홍수
118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산사태	한파
119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산사태	한파
1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산사태	폭염	한파
12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폭염	산사태	한파

연번	시도	시군구	취약재해_1순위	취약재해_2순위	취약재해_3순위
122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사태	폭염	태풍
123	부산광역시	중구	폭염	산사태	한파
12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산사태	폭염	태풍
1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폭염	산사태	한파
12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산사태	한파
127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산사태	한파
1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폭염	산사태	한파
129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3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	폭염	한파
1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6	서울특별시	동작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7	서울특별시	마포구	폭염	산사태	한파
1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	폭염	한파
139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0	서울특별시	성동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사태	폭염	한파
14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한파	산사태
14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5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6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산사태	폭염	한파
148	서울특별시	중구	폭염	산사태	한파
149	서울특별시	종랑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폭염	한파	산사태
151	울산광역시	남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2	울산광역시	동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3	울산광역시	북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4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	산사태	한파
155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6	인천광역시	강화군	폭염	산사태	한파
157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폭염	산사태	한파
159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산사태	태풍
16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한파	산사태
161	인천광역시	부평구	폭염	산사태	한파
162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산사태	한파
163	인천광역시	연수구	폭염	산사태	한파

연번	시도	시군구	취약재해_1순위	취약재해_2순위	취약재해_3순위
164	인천광역시	옹진군	폭염	산사태	한파
165	인천광역시	종구	폭염	산사태	태풍
166	전라남도	강진군	폭염	산사태	한파
167	전라남도	고흥군	폭염	산사태	한파
168	전라남도	곡성군	폭염	산사태	한파
169	전라남도	광양시	폭염	산사태	태풍
170	전라남도	구례군	폭염	산사태	한파
171	전라남도	나주시	폭염	산사태	한파
172	전라남도	담양군	폭염	산사태	한파
173	전라남도	목포시	폭염	산사태	홍수
174	전라남도	무안군	폭염	산사태	한파
175	전라남도	보성군	폭염	산사태	태풍
176	전라남도	순천시	폭염	산사태	태풍
177	전라남도	신안군	폭염	산사태	한파
178	전라남도	여수시	산사태	폭염	태풍
179	전라남도	영광군	폭염	산사태	한파
180	전라남도	영암군	폭염	산사태	태풍
181	전라남도	완도군	폭염	산사태	한파
182	전라남도	장성군	폭염	산사태	한파
183	전라남도	장흥군	산사태	폭염	태풍
184	전라남도	진도군	폭염	산사태	태풍
185	전라남도	함평군	폭염	산사태	한파
186	전라남도	해남군	폭염	산사태	태풍
187	전라남도	화순군	폭염	산사태	한파
18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폭염	한파	산사태
18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폭염	홍수	산사태
19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폭염	한파	산사태
19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폭염	한파	산사태
19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폭염	한파	산사태
19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폭염	산사태	한파
19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폭염	산사태	한파
19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폭염	한파	산사태
1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폭염	한파	홍수
19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폭염	한파	산사태
19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폭염	산사태	한파
1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폭염	한파	산사태
20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폭염	한파	산사태
20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폭염	한파	산사태
2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산사태	폭염	태풍
2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사태	폭염	태풍
204	충청남도	계룡시	폭염	한파	산사태
205	충청남도	공주시	폭염	한파	산사태

연번	시도	시군구	취약재해_1순위	취약재해_2순위	취약재해_3순위
206	충청남도	금산군	폭염	한파	산사태
207	충청남도	논산시	폭염	한파	산사태
208	충청남도	당진시	폭염	산사태	한파
209	충청남도	보령시	폭염	산사태	한파
210	충청남도	부여군	폭염	한파	산사태
211	충청남도	서산시	폭염	산사태	한파
212	충청남도	서천군	폭염	산사태	한파
213	충청남도	아산시	폭염	한파	산사태
214	충청남도	예산군	폭염	한파	산사태
215	충청남도	천안시	폭염	산사태	한파
216	충청남도	청양군	폭염	산사태	한파
217	충청남도	태안군	폭염	산사태	한파
218	충청남도	홍성군	폭염	산사태	한파
219	충청북도	괴산군	폭염	한파	산사태
220	충청북도	단양군	폭염	한파	산사태
221	충청북도	보은군	폭염	한파	산사태
222	충청북도	영동군	폭염	한파	산사태
223	충청북도	옥천군	폭염	한파	산사태
224	충청북도	음성군	폭염	한파	산사태
225	충청북도	제천시	폭염	산사태	한파
226	충청북도	증평군	폭염	산사태	한파
227	충청북도	진천군	폭염	산사태	한파
228	충청북도	청주시	폭염	산사태	한파
229	충청북도	충주시	폭염	산사태	한파

□ 2 서식 및 참고

서식1

시그니처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서식 1】

00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이행관리 현황 보고

☐ 사업개요

건물사진	건축물명	ex) OO 어린이집
	주소	
	연면적(㎡)	
	건축면적(㎡)	
	사용승인일	
	용도	
	구조/규모(층수)	

☐ 참여 관계자

구분	소속	담당자	연락처
지자체/공공기관	00시/ 00군		
시설 관리자			
플랫폼 담당자			
사업기술지원단			
GR 설계사			
GR 시공사			

☐ 총 사업비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신청	5,000,000	3,500,000	1,500,000	-
변경	(변경사항 발생시 작성)			

☐ 추진단계 및 주요현안

준비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사업완료
기획	설계사 선정	설계 中	설계 완료	공사 발주	공사 中	공사 완료
			✓			
주요현안	사업 일정, 사업내용, 사업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현안 등 작성 ex) 건축 공공심의, 임시 이주시설 마련 등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지연 ex) 기술요소 적용 가능여부, 재실공사 방법 등 관계자 협의 필요					

□ 세부 추진일정

구분		시작일	수행기간	완료예정일	완료일자	비고
준비 단계	기획	-	-	-	-	
	발주	26.08.01	-	-	-	
설계 단계	계약	26.09.01	-	-	-	
	착수	26.09.10	26.09.10 ~ 26.12.10	-	-	
	준공	-		26.12.15	26.12.15	구조안전진단 실시
	발주	27.02.01	-	-	-	
공사 단계	계약	27.03.15	-	-	-	
	착수	27.03.20	27.03.20~27.06.20	-	-	이사기간 (27.2~7)
	준공	-		27.07.10	27.06.30	

□ 사업내용(에너지성능개선 및 기후위기적응)

구분		추진내역	적용여부	세부내용(적용예정 또는 적용 상세)
에너지성능개선	건축	벽체	○	(외단열) 기존 단열재 위 T100 PF보드 적용+화강석 마감
		지붕	-	-
		바닥	-	-
		창호	○	T24로이복층유리(AL)
		문	-	-
	기계	폐열회수형환기장치	○	전열교환기 5대 교체(전열교환효율 n%)
		고효율 냉난방장치	○	HP 5대 교체 (COP 난방 : 4.3, 냉방 : 4.5)
		고효율보일러	-	-
		순간온수기	-	-
	전기	조명	○	LED 100% 교체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옥상 설치(용량 5kW, 효율 20%)
		에너지모니터링	-	-
	기타	쿨루프	○	방수차열도료 적용
		선도기술	○	도심형 풍력발전 도입
		건축가설공사	○	외단열 보강에 의한 가설공사 적용
		절수형기기	-	-
		환경선언제품 마간재	○	인증 제품 적용된 벽지 교체
기후위기적응	홍수 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보강		
		우수유출 저감기술		
		누수침수센서		
	태풍	고강도태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폭염	조경공사	○	대지 내 관목 설치
		그린월		
		옥상녹화		
		변동루버		
		옥외 차양구조물		
	혹한 대설	열선포장		
		스노우가드		
	기타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구조안전보강		

☐ 사업내용(기타공사)

구분	추진내역	세부내용(적용예정 또는 적용 상세)
부대공사	기존공사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 추진에 따른 철거 반영
	석면조사 및 제거	-
	GR관련 건축부대공사	누수에 의한 방수공사 등 적용
	GR관련 설비공사	-
	GR관련 전기공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
기타내용	임시시설 이주	ex) 제실공사 어려워 임시시설 이주 예정(약 2달)
	불법 건축	ex) 불법건축 부분 양성화 추진
	⋮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계약금액	낙찰금액	비고
설계비			
공사비	건축·기계		
	전기		
	관급자재1		
	관급자재2		
감리비			
구조안전보강			
이사비			
⋮			
합계			

☐ 참고자료(사진 등)

--	--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에너지 성능 개선	고성능 창호	•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커튼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창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고성능 창호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 창호 공사의 경우 창호기밀공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창 및 문 등 개구부와 구조체의 접합부위(개구부 둘레)에 기밀테이프, 팽창테이프, 또는 탄성도막(가변형방습) 제품 사용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개구부(거실의 창 및 문)의 둘레에 적용하는 제품은 공기투과성 및 투습성이 낮은 제품으로 적용하며, KS F 2607 (건축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에 따른 등가공기층두께(Sd)가 2m를 초과하는 제품 사용 • 기밀테이프는 투습방수 기능을 하는 실외측 기밀테이프와 방습기능을 하는 실내측 기밀테이프를 제품 특성(시방서)에 맞게 적용, 건축물 구조에 따라 친환경 접착제 등 적절한 부자재 활용 * 단, 창 및 문공사를 필수공사로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공사를 인정하며, 위 기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GR센터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가능
	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고기밀성 단열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기밀성 문으로서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 * 방풍실 또는 방풍구조에 설치된 문, 너비 1.2m 이하 출입문,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은 기밀성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음
	내·외부 단열보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 적용 * 기존 단열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강하는 경우 기존 단열재의 열저항값 산입 가능 * 화재확산방지를 위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적용(실내 단열재는 불연재료 적용 권장) * 외부 단열 교체·설치를 위한 직접 가설공사를 지원 범위에 포함
	바닥	• 바닥단열공사(내·외부 단열보강 참고) • 바닥 마감재 하부에 매립시공된 온수 배관 공사(X-L 배관 등) • 전기온돌난방공사(기존 전기방식에서 교체인 경우만 해당)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로서 KS B 6879 규격 인증을 받은 제품 *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 이상, 난방시 70% 이상인 제품 * 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60% 이상, 난방시 80% 이상인 제품 • 공기조화기 부착형 폐열회수 설비(Plate, Rotary, Heat Pipe 등)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보일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동기, 보일러, 냉난방기, 열원용 펌프 등) * ‘규정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의 개수와 종류가 현저히 적은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규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또는 사양)인 경우 인증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예. 정격냉방능력 20kW 미만인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등) ※ 규정범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하는 기자재별 적용범위
	고효율 조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제품(등기구, LED램프, 스마트LED조명) • LED조명으로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 거실 조도 조성용이 아닌 특수 조명인 경우에 한하여 LED조명이 아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가능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 적합한 태양광발전설비
	BEMS	• BEMS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2]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로서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과 데이터 조회 기능을 갖춘 시스템 *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 :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대상으로 함(단, 난방유 등 비정기적으로 충전하는 에너지원에 한하여 제외 가능) * 데이터 조회기능 :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순간온수기	• KS B 8116에 따른 가스 순간온수기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전기식 순간온수기 * 축열 용량 30L 이하만 순간온수기로 인정하며, 30L 초과는 고효율냉난방기 참조
	Cool Roof (차열도료)	• SPS-KPIC 5020-7316에 적합한 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 CRRC(Cool Roof Rating Council) 인증 제품 •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시험방법 ASTM C1549, E903, E1918)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65 이상인 도료
	절수형 기기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 * 수도꼭지, 샤워헤드 및 수도꼭지 절수 부속, 대변기, 소변기
	환경성 선언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환경성적표지제품 또는 저탄소 제품
	기타	•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기 후 위 기 적 응	물막이설비 (차수판, 차수막 등)	「물막이설비 설치 기술기준」에 적합한 높이, 성능, 종류 등 만족하는 제품 * 자동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 필요
	자동침수 방어벽	-
	역류방지밸브 등	-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 - KS B 2308 볼밸브
	집수정과 펌프장치	- KDS 31 30 35 우수설비 설계기준에 따라 집수정과 펌프장치 설치 필요 - 집수정 펌프는 예상사용조건에 맞는 유량과 압력을 가져야 함. - 집수정의 크기는 직경 450mm 이상이어야 하며, 깊이는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점검이 가능하고 모든 배수가 집수정에 중력으로 흐를 수 있는 곳에 설치필요 - 집수정의 사용 장소는 예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거 가능한 뚜껑을 설치하여 타일이나, 철판, 플라스틱, 주철, 콘크리트의 재질로 만들어야 함. (집수정 바닥은 단단하고 펌프용 영구 지지대 설치) - 배출관은 게이트밸브와 체크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배관과 이음쇠의 크기는 펌프 토출관과 같거나 커야 한다.
	유도수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5조에 따른 유도수로 설치
	침투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4장에 따른 침투시설(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투수성 보도블록) *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부록2에 따른 침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설치 필요
	저류시설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제3장에 따른 건축물 저류시설(지하저류조, 저류탱크, 옥상저류, 옥상녹화, 저류형 화단, 배수측구 저류시설)
	누수침수 센서	-
	고강도 내풍유리	KS F 2296에 따라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으로 검증하여 만족하는 유리 및 창호 제품
	자동폐쇄식 창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한국 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조경공사	조경(식재) 공사로서 교목, 관목 등으로 이루어진 것(지피식물과 초화류로만 구성된 조경공사는 제외)
	그린월	(실외) 벽면녹화
	옥상녹화	- 인공지반 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으로, 「조경기준」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구조물 설치 필요 *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

구분	GR 기술요소	내용
	일사조절장치 (변동루버, 옥외차양 등)	• 수평 또는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이거나 P/H 또는 P/W값이 0.4 이상인 것 • 외부 블라인드(베네시안, Roller 등) • 내부 블라인드로서 KS L 9107 규정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이 0.6 이하인 제품
	열선포장	-
	스노우가드	-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	-
	구조안전보강 (내진 등)	-
추가 지원	건축분야	•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석면 조사 및 제거
		• 기타 GR관련 부대공사
	기계분야	•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분야	• 전기용량증설 등 관련 비용
이주비용(이사 및 임차비), 설계비·감리비, 설계공모 대행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 *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 공사완료 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
- * 본사업 공고 시 세부 기준은 변경 가능

참고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절차

사업 단계	'26년 사업절차	주관기관	주요 시점	비고
I 단계 사업 대상 선정	희망건축물 대상(GR컨설팅대상) 접수	사업대상기관→ 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25. 11월~12월	
	'26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GR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 “)	'26. 2월	
	희망건축물 대상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현장조사 및 컨설팅 등) 착수	창조센터 & 컨설팅업체 &지역거점플랫폼	1월	
	사업대상기관과 사업계획 컨설팅 (지자체인 경우 광역까지 협의)	창조센터 & 컨설팅업체 &사업대상기관	1~4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26년 GR 사업설명 (대상건축물, 절차, 일정안내)	국토부 및 창조센터, 사업대상기관	3~4월	
	'26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모 (신청기간, 신청절차 등 안내)	창조센터	4월	
	사업 신청서 제출	사업대상기관→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4~5월	
II 단계 국비 신청 및 교부	사업대상 심의 및 선정·통보 (사업계획 최종확정)	창조센터 및 국토부→GR대상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통보	5~6월	
	국비 교부신청	GR선정기관→센터→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신청	6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국비 교부	국토부→센터→GR선정기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교부	6월	
III 단계 사업 수행 관리 (사업 지구별)	설계 용역 발주 등	GR선정기관		
	설 계	GR선정기관		
	공사 발주	GR선정기관	7월~	창조센터 사업관리 (현황 및 현안처리)
	착공 및 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준공 및 완료 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IV 단계 사업 성과 관리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GR선정기관→국토부&창조센터 *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유 보고	12월~	
	성과 평가	창조센터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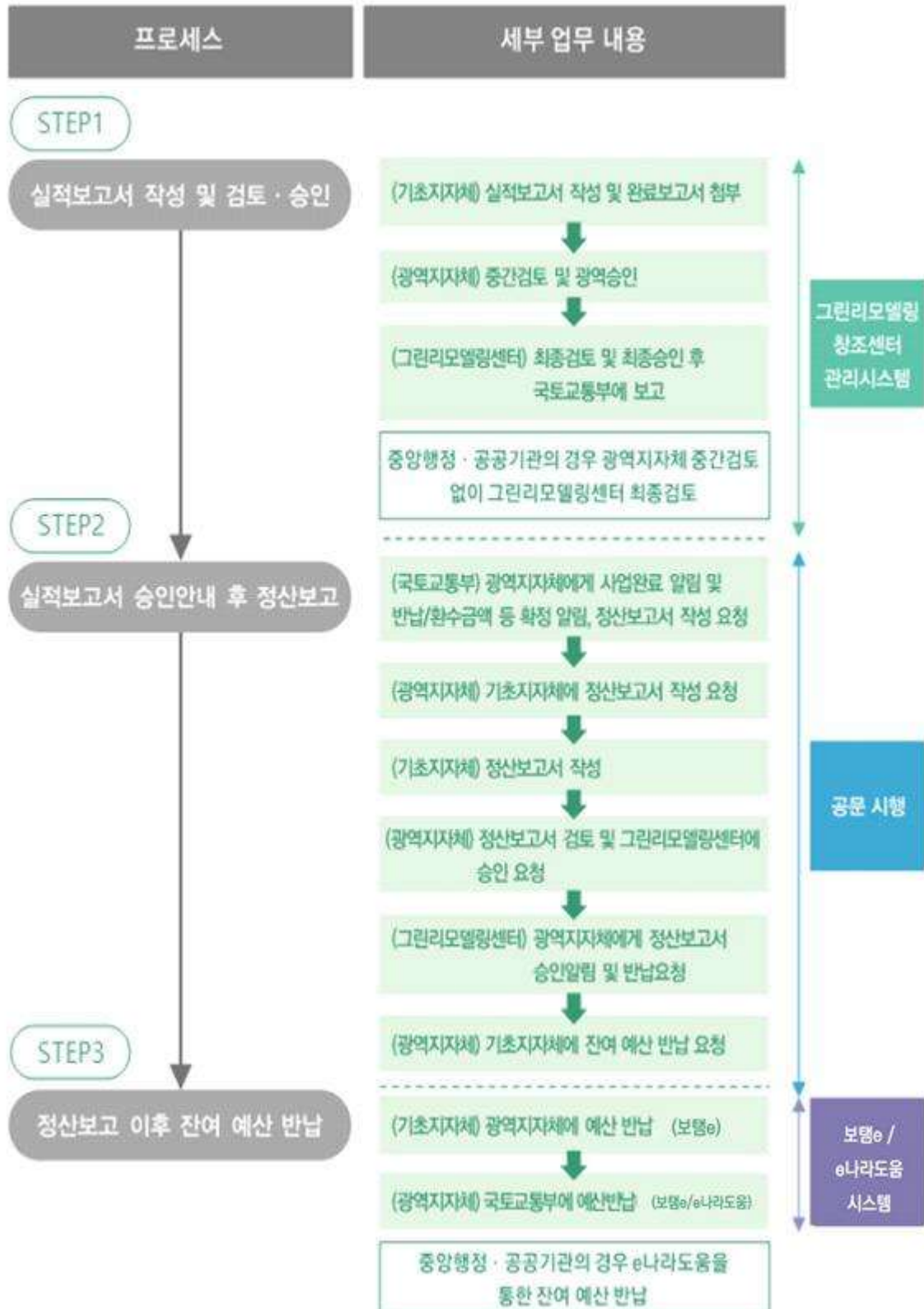
그린리모델링 표준 설계도서 항목

종 류		내 용	비 고
일반 사항 (공통)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표지	
		도면목록표	
		설계 개요 및 일반사항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공사 전·후)	
건축	일반 도면	배치도	
		실내재료마감표	
		형별성능관계내역	
		철거평면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상세 도면	창호 일람표	창호재질, 유리두께 등 창호 사양 구체적 표기
		창호 평면도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각층 천정평면도 및 상세도	
기계	일반 도면	장비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 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 등을 표시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 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 평면도
전기	일반 도면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분전반 변경 시 상세도 포함 작성
		전력 설비 평면도	
		조명 설비 평면도(공사 전·후)	각 층별 조명수량이 확인 가능
		조명기구 상세도	

참고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정산방법 및 세부절차

| 실적보고 작성 및 정산



□ (1단계)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실적보고서
○ 보조사업 사업선정기관은 사업완료시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실적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완료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광역지자체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승인을 받습니다. - 주소 : https://www.greenremodeling.or.kr/backoffice/login_new/login.asp

□ (2단계) 실적보고서 승인안내 후 정산보고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이월시 보조사업 사업선정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지자체인 경우 3개월)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이월현황을 제출합니다.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사업선정기관은 상위보조사업기관(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집행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정산보고서(운영지침-제7호 서식)를 작성·보고합니다.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합니다.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 정산 완료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의 관련조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합니다.

□ (3단계) 정산보고 이후 잔여 예산 반납



잔여 예산 반납-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 반납해야하는 ‘집행 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해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합니다.
 -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 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를 따릅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1.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2.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3.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1.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2.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그린리모델링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 「보조금법」 제31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개요

- (목적)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객관성 보장 및 높은 쾌적성·에너지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로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인증' 등 취득
- (대상기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내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계획에 '있음'으로 신청한 기관
- (인정기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을 취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 삭제
2. 성능개선 전후 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을 30% 이상 개선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30% 이상 개선하는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5.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건축물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절차



- ① (에너지컨설팅) 지자체 등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기관의 전문적 기술 지원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기준에 적절한 설계 계획 수립
- ② (사업계획서) 지자체에서는 설계 계획 확정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로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서류	1. 사업계획서 갑지	2. 사업계획 요약서
	3. 사업계획 및 이행계획	4. 예산 및 조달계획
	5. 성능개선 목표달성을 위한 증빙서류	6. 기존 건축물 에너지 상태평가 결과
	7. 설계도서 등	8.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해당시)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인정서 발급

* 평가는 인정/불인정/보완으로 구분되며, 불인정·보완 시에는 재작성 필요

- ③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공사 완료 후 1개월 내에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공문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로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제출

관련 서류	1.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신청서 갑지(참고1)	2. 사업내용 및 사업결과 요약서
	3.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제7조제1항제1호의 경우)	
	4. 성능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계산서	- 장비용량계산서
	- 건축물 평가용 데이터시트	- 조명밀도계산서
	- 현장사진 및 설계도면	- 기타 성적서 및 인증서
	-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 고지서 사본 등
	- 건축물 전개도	
	5. 녹색건축인증서(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	
	6.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제7조제1항제4호의 경우)	
	7. 종합성능개선 증빙자료(제7조제1항제5호의 경우)	

- 제출된 인정신청서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12조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하고 인정서 발급

□ 사업 배경

-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 적용을 통해 지역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대표사례를 창출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홍보효과 제고

* 탄소흡수원 선순환 자재(국산목재, 바이오톱 등), 외부차양 및 집광채광루버시스템 등

□ 추진 방법

- 건물별 최적화된 시그니처 요소를 발굴하여 사업 전(全)과정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체계적 관리지원

* 권역별 지역거점 플랫폼에서 설계검토부터 시공·공사 후 성과분석까지 지원

□ 주요 사례

- 경기도 용인중앙도서관

GR 사업연도	2023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27
연면적	3,664.36㎡		건축면적	1,106.87㎡
사용승인일	1993년(32년경과)		용도	도서관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3층
총사업비	약 66억(국비 46.6억 / 지방비 19.9억)		에너지절감률	38.0% (178.1→110.4 kWh/㎡)
공사범위	건축	벽체·바닥 외단열 보강, 지붕 내단열 보강, 창호 교체, 쿨루프 적용		
	기계	EHP 교체, GHP 설치,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		
	기타	일사조절장치, 디지털 트윈		
개선전				개선후
				

○ 대전 관저보건지소

GR 사업연도	2023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산북로 300
연면적	1,066.21 m ²		건축면적	524.67 m ²
사용승인일	2004년(21년경과)		용도	보건소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2층
총사업비	약 19.4억(국비 13.6억 / 지방비 5.8억)		에너지절감률	28.6% (164.2→117.3 kWh/m ²)
공사범위	건축	벽체 외단열 보강, 지붕 내단열 보강, 창호 교체, 쿨루프 적용		
	기계	EHP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		
	기타	친환경 목재 사용, 외부 수직 루버 설치		
개선전				개선후
				

○ 대구 시립동부도서관

GR 사업연도	2023년 사업(시그니처)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11길 54
연면적	7,395.62 m ²		건축면적	1,665.36 m ²
사용승인일	1995년(30년경과)		용도	도서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 4층
총사업비	약 58.4억(국비 40.9억 / 지방비 17.5억)		에너지절감률	15.0% (244.6→69.0kWh/m ²)
공사범위	건축	지붕 외단열 보강, 창호 교체		
	기계	EHP·GHP 교체,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전기·신재생	고효율 LED 교체, 태양광 신설		
	기타	하이브리드 가로등(풍력+태양광), 친환경 체험 마당 조성 등		
개선전				개선후
				

참고7

그린리모델링 종합시공사례(충북 청주의료원)

□ 충북 청주의료원 현장 사진

건축물 전경	1층 복도	옥상 히트펌프
		

□ 그린리모델링 공사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공사내용)
그린 리모 델링	건축	외벽	-	외벽 일부 마감재
		창호	22mm 복층창(PVC)	39mm Low-E 삼중창(AL)
		출입문	일반문	단열문
		바닥	-	전기 필름바닥난방
		지붕	-	내단열(T140)
		구조보강	-	전단벽 보강
	기계	고효율 냉난방장치	천장형, 벽걸이	천장형, EHP
		LED	일부	전체

개선 전	개선 후
	
전단벽 보강	조감도
	

□ 강원 삼척시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개요

- (개요)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보조 (총사업비 27.2억 / 국비 19억원)를 통해 개선공사 시행

《 삼척시보건소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개요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47-4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지하 0층 지상 3층
연면적	3,542.32 m ²	용 도	업무시설(보건소)
건축연도	2009	사용시간	연중 가동
구 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외 관			
공사 내역	외벽·지붕	외단열(45mm)	외단열(220mm PF보드)
	외부창	5mm 단창	26mm 로이복층 유리
	냉방장치	EHP	고효율 EHP, GHP
	보일러	기름보일러	고효율 가스보일러
	조명	LED(7년경과)	LED
	환기·신재생	없음	폐열환기장치, 태양광
공사비		27.2억	

□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툴 : EC02-0D)

구 분	공사 전(A)	공사 후(B)	절감률
에너지 요구량(kWh/m ²)	87.0	44.8	48.51 %
에너지 소요량(kWh/m ²)	112.8	27.2	75.89 %
1차에너지 소요량(kWh/m ²)	192.8	28.8	85.06 %
온실가스 배출량(kgCO ₂ eq)	106,941.4	24,745.8	76.90 %
식재효과(소나무 기준)	10,148 그루		
산림조성효과(소나무 기준)	85,927 m ²		
승용차 대체효과	33.83 대/년		

□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필수공사

- ▶ 외벽 단열 보강
- ▶ 지붕 단열 보강
- ▶ 창호 교체_로이복층유리
- ▶ 단열문 교체
- ▶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 ▶ 전열교환기 설치
- ▶ LED 조명 교체

시그니처 요소

-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014등급에 준하는 성능 확보
- ▶ 태양광 발전설비 신설(옥상, 남쪽면)
- ▶ 신재생 발전량 모니터링 관광판 설치
- ▶ COOL ROOF 적용
- ▶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실내공간 조성
- ▶ 외부 녹지 조성
- ▶ 주민 휴게공간 조성
- ▶ 노약자를 위한 접근로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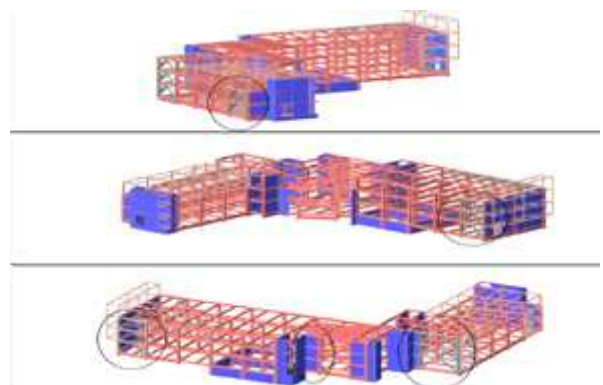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적용기술 주요내용	비고
외벽 단열	• 확인불가 ⇨ 220mm PF단열재 • 열관류율($W/m^2 \cdot K$) 0.729 ⇨ 0.156 (단열성능 79% 증가)	0.729 W/m²K 0.156 W/m²K
창호	• 5mm 이중창 ⇨ 26mm 로이복층유리 • 열관류율($W/m^2 \cdot K$) 3.6 ⇨ 1.2 (단열성능 67% 증가)	3.6 W/m²K 1.2 W/m²K
냉방	• EHP ⇨ 고효율 EHP • COP(성적계수) 3.23 ⇨ 3.90	COP 3.23 COP 3.90

□ 노후시설 안전성 확보 및 내진 보강요소 강화

그린리모델링 내진 보강요소

내진보강 기준			
■ 고정하중 및 활하중 - 고정하중: 구조의 차등 및 건축도면상의 마감표 기준으로 파악하감. 천장, 외부마감 등의 하중을 고려 - 활하중: 건축구조기준에 의한 실효 하중을 고려			
실용도	활하중	실용도	활하중
사무실	3.06 kN/m²	다목적실	5.1 kN/m²
배도	4.08 kN/m²	지붕	3.06 kN/m²
■ 적설하중 지역 강설도 산정시 냉방형			
지역	강설도 산정시 냉방형	지역	강설도 산정시 냉방형
지상적설하중	5g = 2.0kN/m²	지역	강설도 산정시 냉방형
기본적설하중계수	0.7	노출계수	1.0
온도계수	1.2	풍온도계수	1.2(寒)
■ 풍하중 설계기본풍속 34m/sec 지표면조도구분 C			
지역계수	1.0	풍온도계수	1.0
■ 지진하중 지역계수 0.176 지반의 종류 S+			
풍온도계수	1.5	내진설계범주	D
내진능력계수	vs=0.250g	반응수정계수	3.0



참고8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사례(광명 구름산어린이집)

□ 광명 구름산어린이집

- (개요)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보조 (총 사업비 3.2억(국비 2.2억, 지방비 1.0억))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준공('21.8월)

《 구름산어린이집 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개요 》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가림일로 76	구조/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322.00 m ²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연도	2001	사용시간	연중 가동
구 분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외관			
공사 내역	외벽·지붕	외단열	외단열 + 단열 보강
	외부창	16mm AL 복층유리 단창	24mm AL 로이 복층유리 이중창
	냉방장치	PAC(전기냉방기)	고효율 EHP
	난방장치	가스보일러	고효율 가스보일러
	조명	LED 100%	-
	환기·신재생	배기팬	폐열회수장치, 태양광
공사비		3.2억	

□ 효과 분석 (시뮬레이션 툴 : EC02)

구 분	공사 전(A)	공사 후(B)	절감률
에너지 요구량(kWh/m ²)	98.8	59.3	40.0 %
에너지 소요량(kWh/m ²)	138.2	44.0	68.2 %
1차에너지 소요량(kWh/m ²)	209.6	23.0	89.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수준	1 등급	1+++등급	-
온실가스 배출량(kgCO ₂ eq)	12,417.7	1,568.9	87.4 %
식재효과(소나무 기준)	1,339 그루		
산림조성효과(소나무 기준)	11,338 m ²		
승용차 대체효과	4.46 대/년		

□ 그린리모델링 종합 계획



□ 세부 개선 사항

구분	적용기술 주요내용	비고
외벽 단열	- 외단열* ➡ T135 경질우레탄보온판 - 열관류율($W/m^2 \cdot K$) 0.62 ➡ 0.13 (단열성능 78.89% 증가)	 0.62 $W/m^2 \cdot K$ → 0.13 $W/m^2 \cdot K$
창호	16mm 복층유리* ➡ 24mm 로이복유리 - 열관류율($W/m^2 \cdot K$) 3.84 ➡ 1.60 (단열성능 58.33% 증가)	 3.84 $W/m^2 \cdot K$ → 1.60 $W/m^2 \cdot K$
냉방	- PAC* ➡ 고효율 EHP - COP(성적계수) 2.83 ➡ 2.83 - 용량 28.54 kW ➡ 52.20 kW	 COP 2.83 → COP 2.83

□ 개선 효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비교	•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비교	• 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 비교
 (단위: $kWh/m^2 \cdot y$)	 (단위: $kWh/m^2 \cdot y$)	 (단위: $kWh/m^2 \cdot y$)
[에너지 요구량] 건물이 냉방·난방·급탕·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량	[에너지 소요량] 건물이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	[1차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연료 채취·가공·운송 변환 등의 손실을 포함한 에너지량

3 Q&A

Q1. 그린리모델링이란 무엇인지?

A.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기후 위기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말하며 단순 창호·설비 교체 등 개보수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포함함

Q2.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의 '준공' 기준이란?

A. 준공은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을 말하며, 실 준공일과 사용승인 일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준공관련 서류를 증빙하면 확인 후 준공일 인정(증빙 예시: 준공검사조서 등)

Q3. 그린리모델링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A.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를 신청한 건축물의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을 통해 현장 조사와 설계컨설팅을 실시하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함. 대상 선정 후 사업비 교부가 되면 지자체가 설계와 공사 발주를 추진

* 공사 전 종합사업관리비는 국비로 지원하며 '26년 희망건축물을 신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만 본 사업공모 신청 가능함

Q4. 국가로부터 일부 운영비를 보조받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소유 및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불가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에 따라 **중앙행정·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5.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바.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Q5. 사업비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A.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범위는 설계비와 공사비이며, 공사비의 경우, 에너지성능개선, 기후위기적응에 대한 공사비 및 추가지원 항목을 포함
- “서울시,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하 “서울·중앙·공공”)이 소유(임차 포함)한 건축물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 지원 가능
 - GR사업 건축물당 총사업비는 연면적(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비 지원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사업유형별로 다르나,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 자부담
 - * 건축물대장과 상이하게 신청할 경우, 실측면적 도면 등 별도증빙서류 필요
 - **종합형(일반)사업의 기준으로 총사업비 한도는 400만원/3.3m²이고, 서울·중앙·공공*의 경우 건축물당 200만원/3.3m²(400만원×50%)까지 국비 지원가능하며, 그 외** 280만원/3.3m²(400만원×70%)까지 국비 지원가능**
 - * 서울 : 서울특별시, 관할 구, 산하 공공기관 / 중앙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공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단, “서울시 외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
 - ** 그 외 : 서울시 외 지자체, 관할 시군구, 산하 공공기관
 - 단, 소규모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m²미만)인 경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420만원/3.3m²이고, 서울·중앙·공공은 210만원/3.3m²(420만원×50%), 그 외 294만원/3.3m²(420만원×70%)까지 국비 지원
 -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포함)의 경우 노임,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의 20% 할증하여 지원
 - 종합형 및 맞춤형은 사업 당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7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50억)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군집형은 건물 동수 당 정해진 국비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대상기관에서 초과 금액 부담 가능
 - * 2~3개동 : 최대 15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107억) / 4~5동 : 최대 250억(서울, 중앙·공공의 경우 178억)
 - 기타 GR사업 관련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
 - 문주 등 건물 외 부분은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만 공사 가능하며, 공사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가능

Q6.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2층에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복합용도 건축물 면적(전용면적) 중 사업대상 용도면적(전용면적) 비율이 50% 이상 시 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의 주용도가 지원용도일 경우, 전체건축물을 대상으로 100% 지원가능(사업대상기관이 소유한 건물만 가능). 해당시설의 지원가능 용도 전용면적이 건축물 50% 미만은 지원불가

Q7. 설계사 및 시공사는 누가 선정하는지?

A. 해당 건축물을 소유·관리하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

Q8. 민간소유의 건물을 취약계층 이용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A. 임차한 건축물(준공 후 10년 경과)은 임차기간이 2031년 1월 1일 이후 까지 계약체결 된 경우 지원가능

- 단,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 임차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민간이 사용하는 타 용도 지원불가

Q9. 해당 공사를 올해 완공해야 하는지?

A. 올해 공사 완료가 원칙으로 연례적 이월 및 사업취소가 최소화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 다만, 사업규모 및 대수선으로 인한 인허가 등으로 공사 기간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한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최대 3년('28.12.31.까지) 이월 가능

- 단, 군집형의 경우 사업 연차별로 상이함
(1차년도) '28.12.31.까지, (2차년도) '29. 12.31.까지

Q10. 공사 시 기존 용도 운영 등을 위한 이주비 등 설계비와 공사비 이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은?

A. GR사업 관련한 용역, 공사, 이주비,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 지원 가능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GR 용역	설계, 감리비, 폐기물처리(석면처리 및 관련감리포함), 구조안전점검(내진성능확보 검토 등), 설계공모대행 등	
GR 공사	공사(철거포함 가능), 관급자재 조달 등	
이주비	임시공간 임차비용 ¹⁾ , 이사비용 ²⁾	차량운행비(통학, 출퇴근), 집기류 등 지원불가
기반시설 ³⁾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 증설관련 비용 등	기반시설비용이 GR 공사비보다 큰 경우 지원 불가
안전 관련 비용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⁴⁾ , 해체계획서작성비 ⁵⁾ 등	

1) 요양시설 등 입소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공사 진행을 위한 입소자 이송 인건비 지원가능

2) 공사범위에 기존 숙소가 포함된 경우, 임시 숙소 임차료 지원 가능

3) GR공사와 관계없는 소방시설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지원 불가

4)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 근거하여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의 경우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함

5)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하는 경우 해체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함

※ 이주비의 경우, 공사기간 이외의 집행 내역은 정산 시 불인정 될 수 있음

Q11. 공사 전 종합사업지원 및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선정 조건은?

A.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는 아래와 같음

구 분		기술요소
에너지성능개선	건축	내·외부 단열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고성능 창 및 문* * 외기에 직·간접하는 창호의 경우, 창호기밀 필수포함
	기계, 전기 등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히트펌프 등), 고효율 보일러, 순간온수기,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기타	Cool Roof(차열도료), 선도기술(Sola Tree, 소형풍력, ESS, 광덕트 등), 건축가설공사(단열 및 창호 교체/설치 등을 위한 직접가설비), 절수형기기, 환경성선언 제품(EPD) 마감재(벽지, 천장재, 바닥재)
기후위기 적응	홍수 폭우	차수판·차수막, 자동침수방어벽, 배수설비 보강(역류방지밸브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침수시설, 저류시설 등), 누수침수 센서 등
	태풍	고강도 내풍유리, 자동폐쇄식 창문 등
	폭염	조경공사, 그린월, 옥상녹화, 변동루버, 옥외 차양구조물 등
	대설	열선포장(지붕, 진입로 등), 스노우가드 등
	기타 (기름/자반침하 등)	빗물저장 및 활용시스템(집수·여과·저장), 구조안전보강(내진성능 확보 검토 등)
추가지원	부대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GR 관련 건축 부대공사, GR 관련 설비 부대공사, GR 관련 전기부대공사, GR 관련 소방부대공사
	기타	설계비, 감리비, 이사비 및 임차비용, 안전 관련 비용(건설재해 예방기술지도비 등), 설계공모 대행비

※ 단, 위 항목 외 선도적인 신기술 및 기후적응 기술 등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지원가능(ex.친환경 건축 공법 및 자재, 국산 목재 사용, 에너지절감 설비 시스템 등)

*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의 세부 적용 기준은 가이드라인 P.49 [참고1] 참조

○ 사업유형별 사업지원 조건은 상이함

- **(종합형*/군집형)** 에너지성능개선 항목 중 **최소 3개 이상**(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 포함) 적용 및 기후위기적응 항목 중 **최소 1개 이상** 적용하여 사업 신청 및 지원

* 시그니처 사업은 선도기술 최소 1개소 이상 적용 필요

- **(맞춤형)**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건축물

- ❶ (개보수형) 최초 준공 이후 보수이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 ❷ (성능개선형)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1차에너지소요량, 절감률 또는 자립률 등을 고려
- ❸ (건물특화형) 건축물의 특징에 의해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일부만 수행하거나, 한가지 요소에 특화하여 수행이 필요한 경우

○ 전문기관(GR종합사업지원업체)은 GR사업건축물별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아래의 컨설팅 우선 검토 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신청함

<GR종합사업지원 및 설계·공사 우선 검토순위>

- ① 필수공사·선택공사를 적용하여 에너지성능개선(절감률)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 * 에너지 절감률 30% 이상을 목표로 추진, 미달성 사업지의 경우 사유서 제출 필요
- ② 추가지원 가능 공사 중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적용 검토
(GR컨설팅 내역에 “석면조사 필요”가 표시된 경우, 석면조사 필수 신청)
- ③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나머지 항목을 적용 검토

Q12. 사업공모 신청서에 반영한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를 선정 이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한지?

- A. 지자체에서 설계 발주 후,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운영지침」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변경사항은 사업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변경 신청 시,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 제출이 필요하며, 필요시 GR종합사업지원업체 자문 가능

< 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 대상(운영지침 제20조) >

1. 지원사업의 중대한 변경을 하려는 경우
2. 공사 완료 후 공사비 잔액 또는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추가지원공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단, 추가지원공사비가 신청대비 20%미만 증가 및 에너지공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정산 시 일괄로 보고한다.
3. 동일 사업선정기관(기초지자체 단위 또는 중앙행정·공공기관-해당기관) 내의 총사업비의 변동 없이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경우
4. 추가지원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 추가지원공사비가 신청대비 20%이상 증가하는 경우
6.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지원 대상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고 할 때
8. 지원 대상사업을 다른 사업선정기관에게 인계하는 경우
9.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Q13. 사업공모 선정 이후 사업 취소 가능여부?

- A.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취소 승인 절차를 득한 후 사업 취소가 가능하며, 단순 취소 시 차년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선정 배점기준표 “사업관리”에 단순 취소에 대한 배점 기준 참조

Q14.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한지?

- A. 사업비 전용 가능.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심의 절차 진행 필요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신청하고 추진하는 공공기관(지자체·중앙행정·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별로 사업비 전용**이 가능함

* 기초 지자체 단위, 중앙행정 - 해당 행정기관, 공공기관 - 해당 공공기관

** 단,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절차 진행 필요

※ 예) 서울시 송파구 A 건물 사업비 100백만원(국비기준), B 건물 사업비 200백만원(국비기준)으로 총 300백만원으로 최초 사업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을 통해 A 건물 사업비를 150백만원(국비기준), B 건물 사업비를 150백만원(국비기준)으로 변경하여(총액 변동없음) 사업 추진

Q15. 그린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

- A.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을 받아 진행 필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부 칙 <대통령령 제25786호, 2014.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수선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신청(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대수선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